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국가경찰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

■ 용혜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829호)

2026. 2.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용혜인의원 등 10인
2. 제안연월일 : 2025. 12. 3.
3. 회부연월일 : 2025. 12. 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률안은 용혜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827호)에 부수하는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에 국가경찰위원회를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제10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용혜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827호) 및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82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국가경찰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제10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① (생략)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에 따라 설치된 부·처·청과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으로 하되,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 및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다.	② ----- ----- ----- ----- -----.
1. ~ 9. (생략)	1. ~ 9. (현행과 같음)
<u><신설></u>	<u>10.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국가경찰위원회</u>
③ ~ ⑩ (생략)	③ ~ ⑩ (현행과 같음)

국가경찰위원회¹⁾는 국가경찰행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1991년 「경찰법」이 제정되면서 경찰청의 발족과 함께 행정안전부에 설치된 위원회로서, 경찰청 소관 업무의 전문성·공정성 강화를 통해 경찰청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자문위원회 성격임.

1)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20년 12월 22일 전부 개정, 2021년 1월 1일 시행)에 따라 기존 ‘경찰위원회’가 ‘국가경찰위원회’로 기관 명칭이 변경됨.

개정안은 국가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경찰행정에 관한 주요 정책을 결정하고 경찰 직무집행의 감독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여 위원회의 위상 및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입법취지임.

참고로, 개정안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4827호)과 함께 발의된 것으로 그 논의 경과에 따라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해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하고, 국회 및 대통령이 각각 선출 및 지명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위원으로 임명하도록 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독립적 사무기구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현행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²⁾에서 시·도자

2)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국가경찰사무에 관한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경찰 업무 발전에 관한 사항
2. 국가경찰사무에 관한 인권보호와 관련되는 경찰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3. 국가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부패 방지와 청렴도 향상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
4. 국가경찰사무 외에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의 업무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
5.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에 대한 경찰의 지원·협조 및 협약체결의 조정 등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
6. 제18조에 따른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주요 법령·정책 등에 관한 사항, 제25조제4항에 따른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의결에 대한 재의 요구에 관한 사항
7. 제2조에 따른 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8. 제32조에 따른 비상사태 등 전국적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청장의 지휘·명령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및 경찰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국가경찰위원회의 회의에 부친 사항

치경찰위원회의 위원 추천,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의결에 대한 재의 요구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① 국가경찰사무에 관한 목표의 수립 및 평가, ② 국가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비위에 대한 감독, ③ 국가경찰의 부당한 수사 지휘에 대한 조치 요구 사항, ④ 국가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의 소지가 있는 규칙, 제도, 정책, 관행 등의 개선, ⑤ 국가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승진, 전보, 보직 등 인사에 관한 사항, ⑥ 국가수사본부장의 임명·제청에 관한 사항 ⑦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 ⑧ 국가경찰의 인권침해행위의 감독 등을 추가함.

이는 자치경찰사무를 지휘·감독하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목표의 수립 및 평가, 자치경찰사무 감사 및 감사의뢰 등을 통해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가 가능하도록 규정한 현행법의 취지를 고려한 것으로 보임.³⁾

※ 「국가경찰위원회 규정」 5조(심의·의결사항의 구체적 범위) ① 법 제10조제1항제1호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경찰청 소관 법령과 행정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경찰공무원의 채용·승진 등 인사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
3. 경찰공무원에 대한 교육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4. 경찰복제 및 경찰장비에 관한 사항
5. 경찰정보통신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경찰조직 및 예산 편성 등에 관한 사항
7. 경찰 중·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위원회가 경찰 주요정책 및 경찰 업무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10조제1항제2호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는 경찰행정 및 수사절차
2. 경찰행정과 관련되는 과태료·벌칙금 기타 벌칙에 관한 사항
3. 경찰행정과 관련되는 국민의 부담에 관한 사항

3)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설치) ②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다만, 현행법상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소속청의 중요 정책 수립에 관하여는 그 청의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⁴⁾

개정안과 같이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위원회가 주요 정책을 의결하고 경찰청과 소속기관의 직무집행을 감독할 경우, 경찰청과 위원회의 사무가 중복될 우려가 있고, 행정안전부장관 및 경찰청장의 지휘·감독권과 충돌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⁵⁾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위원회 간의 관리·감독 권한, 경찰청과 위원회 간의 업무 범위 중복 가능성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339

수행한다.

제28조(시·도경찰청장) ③ 시·도경찰청장은 국가경찰사무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자치경찰사무에 대해서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아 관할구역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 및 소속 경찰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수사에 관한 사무에 대해서는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관할구역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 및 소속 경찰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4) 「정부조직법」 제7조(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 ① 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②·③ (생략)

④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소속청에 대하여는 중요정책수립에 관하여 그 청의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다.

5)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경찰청장) ③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사무를 총괄하고 경찰청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 및 각급 경찰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 국가경찰위원회 개요

- (목적)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 민주적 통제를 위해 주요치안정책에 대한 심의·의결기구로 행안부에 설치('91.7.31)
- (근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21.1.1 개정*)
 - * 舊 경찰법 제5조 (경찰위원회) ⇒ (현행) 국가경찰위원회

설립 연혁

- 행정개혁위원회에서 확정된 경찰의 중립성 보장방안을 토대로 정부·여당 공동으로 경찰 법안 마련('89.10월)
- 야 3당 단일법안 마련('89.11월)
- 154회 임시국회에서 정부·여당안 통과('91.5.31) ※ 경찰청 발족과 함께 설치

- (구성) 위원장(비상임) 1인, 상임위원 1인(차관급), 비상임위원 5인 등

□ 국가경찰위원회 기능

- 경찰 주요 정책에 대한 심의·의결
 - 국가경찰의 인사·예산·장비·통신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경찰 업무발전에 관한 사항
 - 국가경찰사무에 관한 인권보호와 관련되는 경찰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 국가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부패 방지와 청렴도 향상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
 - 국가경찰사무 외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의 업무협조 요청 사항
 -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에 대한 국가경찰의 지원·협조 및 협약체결의 조정 등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
 - 기타 행정안전부장관 및 경찰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한 사항

참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2214827) 제7조 · 제11조 · 제11조의2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국가경찰위원회의 설치) ① 국가경찰행정에 관하여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국가경찰위원회를 둔다. ② 국가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5명의 위원은 비상임(非常任)으로 하고, 1명의 위원은 상임(常任)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 중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한다. 제11조(국가경찰위원회의 운영 등) ① 국가경찰위원회의 사무는 경찰청에서 수행한다. ② 국가경찰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국가경찰위원회의 운영 및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심의·의결 사항의 구체적인 범위, 재의 요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국가경찰위원회의 설치) ①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고 경찰 직무집행의 감독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경찰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② 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삭 제> 제11조(위원회의 소관사무) 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국가경찰사무에 관한 목표의 수립 및 평가 2. 국가경찰사무에 관한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에 관한 주요정책의 수립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 3. 국가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에 관한 주요정책 및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의 소지가 있는 규칙, 제도, 정책, 관

<신 설>

- 행 등의 개선
4. 국가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비위에 대한 감독
 5. 국가경찰사무 외에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의 업무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
 6. 국가경찰의 부당한 수사 지휘에 대한 조치 요구 사항
 7.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협력 지원 등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
 8. 국가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승진, 전보, 보직 등 인사와 관련된 사항
 9. 제2조에 따른 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10. 제3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11. 그 밖에 국무총리 및 경찰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친 사항
 12. 국가경찰의 인권침해행위의 감독
 13. 국가수사본부장의 임명·제청에 관한 사항
- 제11조의2(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1. 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제청에 관한 사항
 2.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경찰청 인사안에 대한 동의

3. 국가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주요 비위 사건에 대한 감찰, 감사, 징계 등의 요구

4. 부당한 수사 지휘에 대한 조치 요구

5. 경찰청장 및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한 해임건의

6. 국가경찰사무와 관련한 법령, 규칙, 준칙 등의 제정 및 개정

7. 인사, 예산, 치안 등과 관련한 정책 수립

8.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국가경찰의 협력지원에 대한 사항

9. 제11조의6제6항의 국가경찰인권감독관으로부터 보고받은 사항

10. 제32조에 따른 비상사태 등 전국적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청장의 지휘, 명령에 대한 동의

② 경찰청장 및 국가수사본부장은 제1항 각 호의 심의·의결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그 심의·의결 사항을 서면으로 전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심의·의결 사항을 관련 공무원이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그에 대한 감사, 감찰, 징계를 경찰청장 및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11조의6제6항의 국가

	<u>경찰인권감독관으로부터 보고받은 인권침해사항과 관련하여 경찰청장 및 국가수사본부장에게 그 시정을 권고하여야 한다.</u> <u>⑤ 제4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경찰 청장 및 국가수사본부장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권고사 항의 이행계획을 위원회에 통지하여 야 하며,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이유를 위원회에 통지 하여야 한다.</u>
--	---